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4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부곡동 공설(공원)묘지에 현행 분묘시설 외에 납골묘를 새로이 설치(2003.12.31준공 예정)하게 됨에 따라 납골묘의 사용료를 정하고 매장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설(공원)묘지 매장 및 납골묘의 사용료 등을 조정함(안 별표2)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 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第12條 (公設墓地 등의 設置) ①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公設墓地、公設火葬場 및 公設 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 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 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03.10.8 ~ 10.28(20일)

☐ 기타 참고사항

○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심의필(2003. 9. 2)

○ 전국 공·사설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현황(별첨)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매장"을 "매장 또는 납골"로 하고 "묘지를" "장사시설을" 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묘지"를 "분묘"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묘지"를 "장사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묘지"를 "장사시설"로 하며, 동항중 "묘지조성"을 "장사시설 조성"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합장"을 "합장분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분묘"를 "장사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중 "분묘는"을 "장사시설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분묘"를 "분묘(납골)"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묘지관리"를 "장사시설의 관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묘지"를 "장사시설"로 한다.

제18조중 "묘지"를 "장사시설"로 한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등"의 2. 공설묘지의 명칭중 "팔곡동 일반공설묘지"를 "팔곡동 공설묘지"로 하고, "사사동 일반공설묘지"를 "사사동 공설묘지"로 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환경위생과
입안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환경위생과장 정 내 관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위생담당 유 현
	담 당 자 성명 · 전화	유 정 시 (행정 2233)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1기당 면적	계	사용료	관리비	비 고
공설공원묘지	6.6㎡이하	815,000	307,000	508,000	매장
공설 묘지	6.6㎡이하	172,000	145,000	27,000	매장
공설공원묘지 무연분묘	0.25㎡이하	100,000	60,000	40,000	화장 유골매장
납 골 묘	-	209,000	162,000	47,000	화장 유골안치

※ 비 고

1. 매장묘의 비석대, 잔디료, 매장 산역비 및 청소비등 실비는 별도 부담한다.
2. 납골묘의 사망자 명패 제작비는 별도 부담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설공원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2. ----------매장 또는 납골 ----------장사시설을----------
3.~6. (생략)	3.~6. (현행과 같음)
제8조(묘지의 면적 제한) ① (생략)	제8조(분묘의 면적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납골묘의 1기당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0.5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안산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장사시설----------
③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묘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장사시설---------- -장사시설 조성----------
④합장의 경우에는 단장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를 가산 징수한다.	④합장분묘----------
11조(분묘의 설치기준 등) ①분묘는 시장이 정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장사시설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① (생략)	제12조(사용허가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분묘(납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묘지관리) ①묘지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생략)	제17조(장사시설의 관리) ①장사시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권한위임) 시장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위임)-----장사시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 등(제4조 관련)	**장사시설의 명칭 등(제4조 관련)**
1. 공설공원묘지 (표 생략)	1. 공설공원묘지 (현행과 같음)
2. 공설묘지	2. 공설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
팔곡동일반공설묘지	상록구 팔곡동 42	4,463
사사동일반공설묘지	상록구 사사동산23	7,736
선부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산59	8,231
대부북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북동 산54	6,744
대부동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동동산281	3,967
선감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감동산130-1	4,679
대부남동 1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산131	8,430
대부남동 2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산132	8,926
대부남동 3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103	7,891
대부남동 4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360	7,537
대부남동 5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369	9,818
풍도동 공설묘지	단원구 풍도동 산 207	22,711
화정동 공설묘지	단원구 화정동 116-1	48,000

명 칭	위 치	면 적(㎡)
팔곡동 공설묘지	상록구 팔곡동 42	4,463
사사동 공설묘지	상록구 사사동 산23	7,736
선부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59	8,231
대부북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북동 산54	6,744
대부동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동동 산281	3,967
선감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감동산130-1	4,679
대부남동 1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1	8,430
대부남동 2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2	8,926
대부남동 3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103	7,891
대부남동 4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360	7,537
대부남동 5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369	9,818
풍도동 공설묘지	단원구 풍도동 산 207	22,711
화정동 공설묘지	단원구 화정동 116-1	48,000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2〉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제10조 관련)

1기당면적 (㎡)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원)			사용자 부담액			
	계	사용료	관리비	계	매장 인건비	비석대	잔디료
6.6이하	200,000	150,000	50,000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다.			

※기준면적 초가 사용할 때 사용료 및 관리비는 초과면적 비율에 의한다.

일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제10조 관련)

1기당면적 (㎡)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원)			사용자 부담액			
	계	사용료	관리비	계	매장 인건비	비석대	잔디료
6.6이하	20,000	15,000	5,000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다.			

※기준면적 초가 사용할 때 사용료 및 관리비는 초과면적 비율에 의한다.

공설공원묘지 무연분묘 사용료 및 관리비(제10조 관련)

1기당면적(㎡)	무연분묘 사용료 및 관리비(원)			비 고
	계	사용료	관리비	
0.25 이하	100,000	60,000	40,000	

개 정 안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1기당 면적	계	사용료(원)	관리비 (원)	비 고
공설공원묘지	6.6㎡이하	815,000	307,000	508,000	매장
공설묘지	6.6㎡이하	172,000	145,000	27,000	매장
공설공원묘지 무연분묘	0.25㎡이하	100,000	60,000	40.000	화장 유골 매장
납골묘	-	209,000	162,000	47,000	화장 유골 안치

※ 비석대, 잔디료, 매장 산역비 및 청소비 등 실비는 별도 부담한다.

※ 납골묘 사망자 명패 제작비는 별도 부담한다.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184

제안년월일 : 2003. 11. 20.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공설공원묘지의 매장 사용료를 일시에 407% 인상하는 것은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어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안 제10조 관련 별표2의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중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료를 하향 조정함.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의 공설공원묘지란 중 계 "815,000"을 "612,000"으로 하고, 사용료 "307,000"을 '231,000"으로 하고, 관리비 "508,000"을 "381,000"으로 한다.

신 구 대 비 표

원 안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1기당 면적	계	사용료 (원)	관리비 (원)	비 고
공설공원묘지	6.6m²이하	815,000	307,000	508,000	매장
공설묘지	6.6m²이하	172,000	145,000	27,000	매장
공설공원묘지 무연분묘	0.25m²이하	100,000	60,000	40,000	화장 유골매장
납골묘	-	209,000	162,000	47,000	화장 유골안치

※비석대, 잔디료, 매장 산역비 및 청소비 등 실비는 별도 부담한다

※납골묘 사망자 명패 제작비는 별도 부담한다.

수 정 안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1기당 면적	계	사용료 (원)	관리비 (원)	비 고
공설공원묘지	6.6m²이하	612,000	231,000	381,000	매장
공설묘지	6.6m²이하	172,000	145,000	27,000	매장
공설공원묘지 무연분묘	0.25m²이하	100,000	60,000	40,000	화장 유골매장
납골묘	-	209,000	162,000	47,000	화장 유골안치

※비석대, 잔디료, 매장 산역비 및 청소비 등 실비는 별도 부담한다

※납골묘 사망자 명패 제작비는 별도 부담한다.